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873

발의연월일: 2022. 3. 14.

발 의 자:조경태·조수진·구자근

서병수 · 김용판 · 조명희

하영제 • 백종헌 • 정경희
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 (이하 "채무자"라 함)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하려는 경우 해외 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, 채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또는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해외로 이주하 거나 유학을 간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,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

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(안 제32조 및 제4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 중 "징수할 수 있다"를 "징수한다"로 한다. 제44조제2항 중 "100만원"을 "3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제29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
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	제32조(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
수)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제	수)
29조제3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	
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제	
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	
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	
처분의 예에 따라 <u>징수할 수</u>	<u>징수한다</u> .
있다.	
제44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4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부장관은 제15조, 제20	②
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	
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	
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	<u>300</u> 만원-
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	
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